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 **"영, 유럽 내 경제협력** **핵심 파트너 될 것"**

[이주의 초점]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한·영 FTA' ...
원산지 기준 완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4p)

[위클리 뉴스]

중기부, 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조기 시행
납세자보호요청, 12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EU, 수입식품 관리·감독 대폭 강화 예고 (8p)

[2026 관세평가·품목분류 공모전 수상작]

원가가산법으로 산정된 이전가격, 관세평가에서는?
(12p)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중심
CBP 품목분류 사례연구 (19p)

[품목분류 동향]

가공 방식·구조 따라 다른 변성전분의 품목분류 (32p)

[세번 바로잡기]

유튜브 촬영부터 군사 장비까지 쓰이는 짐벌(Gimbal)
(44p)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2월 22일(통권 제2160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알립니다>

통권 제2161호는 1월 5일 발간됩니다.

▲12월 29일 : 휴간, ▲1월 5일 : 제2161호, ▲1월 12일 : 제2162호

이주의 초점

- 04**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한·영 FTA’ ... 원산지 기준 완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품목분류동향

- 32** 품목분류해설
가공 방식·구조 따라 다른 변성전분의 품목분류
- 44** 세번 바로잡기
유티브 촬영부터 군사 장비까지 쓰이는 짐벌(Gimbal)

08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 12** 2025 관세평가·품목분류 공모전 수상작
대상 작(관세평가)
원가가산법으로 산정된 이전가격,
관세평가에서는?
곽만제 원스탑관세법인 관세사
이지영 관세법인 정상 관세사
대상 작(품목분류)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중심 CBP 품목분류 사례연구
이득렬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
- 29** 질의응답사례
재수출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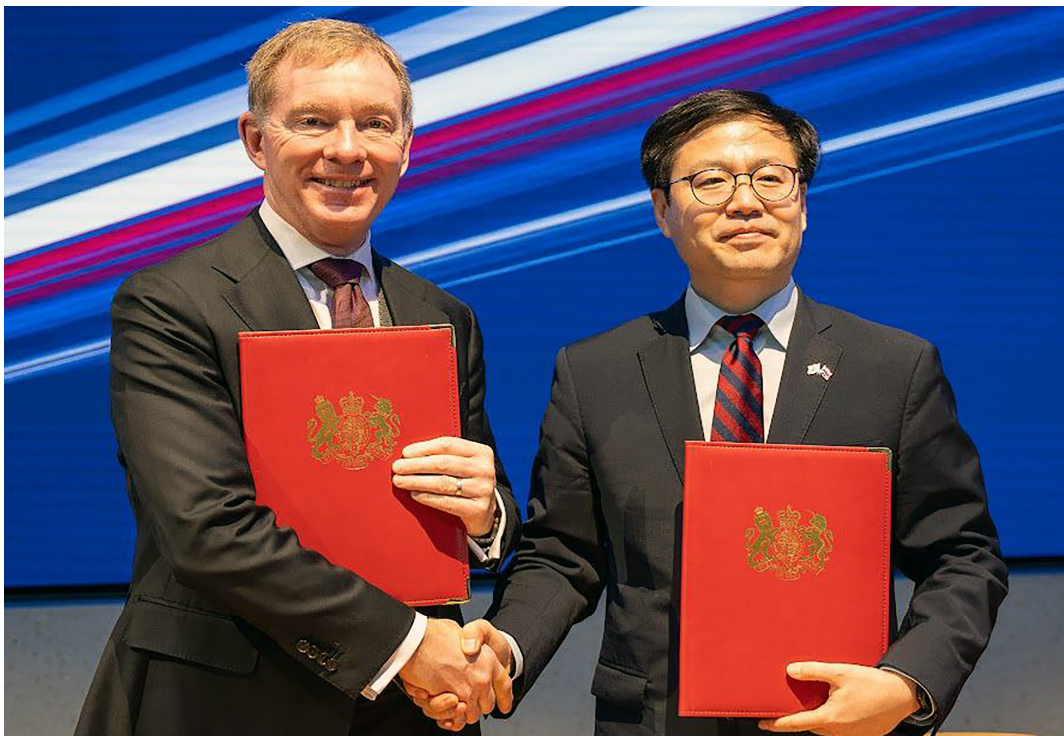
최신개정법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www.kctd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한·영 FTA' … 원산지 기준 완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유럽 내 핵심 파트너 영국과 경제협력 강화하는 계기 될 것”

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12월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양국의 교역 확대를 위한 원산지 기준 완화와 더불어 주요 서비스 시장 개방도 포함됐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돼 양국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우)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통상담당장관(좌) (사진 : 산업통상부)

한·영 FTA는 지난 2019년 3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이후 영국과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19년 8월 체결됐으며 다음 해인 2021년 1월 정식발효됐다.

하지만 당시 협정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돼 새로운 산업과 현실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올해 12월 최종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 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과 투자 허브국가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대영국 수출액은 아직까지 세계 20위권에 불과하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우리의 대영국 교역액은 112억 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이 중 수출은 66억 4,000만달러, 수입 45억 7,000만달러로 20억 7,000만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020년 코로나19 및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1억달러로 감소했다 2024년 20억 7,000만달러로 회복됐다.

● 한국·영국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 출	금액	57.8	73.9	62.9	81.2	63.6	55.2	44.7	59.6	63.4	59.6	66.4
	증가율	22.3	27.8	△14.9	29.1	△21.7	△13.3	△19.0	33.5	6.4	△6.0	11.5
수 입	금액	74.5	61.3	52.1	63.2	68.1	41.7	43.7	58.1	57.8	51.5	45.7
	증가율	20.2	△17.7	△14.9	21.2	7.8	△38.8	△4.8	32.9	△0.6	△10.9	△11.2
무역규모		132.3	135.2	115.0	144.4	131.7	96.8	88.4	117.7	121.2	111.1	112.1
무역수지		△16.6	12.6	10.8	18.0	△4.5	13.5	1.0	1.5	5.7	8.1	20.7

(자료 : 산업통상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자동차,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이며, 수입은 원유, 기타자동차, 의약품, 백금, 승용차 등이 차지하고 있다.

● 대영국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 100만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전기자동차	1,156	원유	499
2	기타자동차	759	기타자동차	363
3	선박	495	의약품	308
4	승용차	421	백금	258
5	무선전화기	384	승용차	226
6	항공기부품	368	주류	208
7	아연도강판	199	계측기	142
8	자동차부품	193	항공기부품	113
9	의약품	165	원동기	101
10	화장품	149	농약	95

2024.12. 기준(자료 : 산업통상부)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의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작년 대영국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기존에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이 가능했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최대 8% 관세 부과 품목이던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공식품의 기존 관세 부과율은 최대 30%였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이 추가로 개방돼 우리 기업의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서비스 분야 개방 약속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거졌던 비자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공급망 현대화 등 신통상규범 도입을 통한 미래 대비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양국은 향후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① 교란 품목 신속 수출, ②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③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 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산업연맹(CBI)의 CEO인 레인 뉴턴 스미스는 “이번 협상 타결은 단순한 무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공급망 강화, 친환경 기준 정착, 기업의 투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양국 경제의 야심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조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수출 단계 및 역량에 맞게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시장조사·전략수립, 제품·서비스 브랜딩 등에 필요한 15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2,000개사는 2025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5단계로 구분해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은 2025년 대비 226억원 증가한 1,502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사업을 강화했다. 먼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바우처를 내년에는 일반 수출바우처와 통합 운영해 참여기업이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하도록 개편했다. 관세 대응 패키지를 활용하면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추가 한도가 부여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바우처가 지원된다.

또 수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한시 적용한 국제운송 지원서비스 2배 상향 조치가 연장되고,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 등도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신규 참여기업이 서비스 메뉴, 수행기관 선택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의 업종, 수출 단계 등 유형별 바우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설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 정산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플랫폼 구독료, 온라인 홍보비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정산 절차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등 간소화해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업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여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도 모집한다. 글로벌강소 및 글로벌강소+ 단계로 지정된 기업에는 소재지별 광역지자체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된다.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동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1월 9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지정 제도인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055-752-85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납세자보호요청, 12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유니패스를 통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돼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 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관세청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동안 관세청에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Tip**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에 '회원가입'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전송에서 신청 유형 선택 후 작성

번호	업무구분	신청대상
1	환송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 조세특례
2	환송	관세청 신고서
3	환송	관세청 조세특례

관세청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으로
어떤점이 달라졌나요?**

- 서식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
증빙자료, 위임장 등의 첨부서류는 온라인에서 업로드 가능해요
- '전송'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신청서 제출**
서류제출을 위해서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가능**
접수 후에 나의 신청이 잘 접수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 이후의 처리 단계를 실시간 조회**
담당자에게 매번 문의할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해요

관세청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은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도 알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해 먼저 회원가입 후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에서 신청 유형에 따른 서식을 선택해 작성하고 전송하면 된다. 전송 후에는 해당 신청 건의 처리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처리 상황 조회도 가능하다.

| 하구현 기자 |

산업부, 무역장벽 조사 실시...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첫 단계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간을 위한 무역장벽 애로 수집이 시작됐다. 수집된 정보는 NTE 보고서에 수록돼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협의하는 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위한 무역장벽 조사 실시 공고를 게재했다.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해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심층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회담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 내년 상반기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에 활용된다.

산업부는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고,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 회의 등을 개최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장벽 조사는 산업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 부처와 협업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무역장벽 조사 접수는 공고에 첨부된 무역장벽 조사 양식 작성 후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tradebarrier25@korea.kr), KOTRA 통상협력팀(tpc@kotra.or.kr), 무역협회 통상연구실(ys.jeon@kita.or.kr)로 제출하고, 작성 관련 문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044-414-1058)으로 연락하면 된다.

| 하구현 기자 |

K-푸드 유럽 수출에 제동 걸리나 ··· EU, 수입식품 관리·감독 대폭 강화 예고

EU가 비회원국에 대한 감사와 검사 빈도를 늘리기로 하는 등 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K-푸드의 유럽 수출 환경도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U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EU의 농산물 무역은 수출이 수입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식료품은 수출 비중이 수입을 상회하는 반면, 식물성 생산품과 동식물성 지방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2024년 농산물 수입액 구성에서는 식물성 생산품이 746억유로(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8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파리지사가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발표한 'EU, 수입식품 관리·감독 강화 예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향후 2년간 회원국에 대한 감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비회원국에 대한 감사 횟수는 5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내 농민들이 불공정 경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한 품목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검사 빈도가 상향 조정되며, 농약 잔류물, 식품·사료 안전, 동물복지 등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도 신설된다. 수입 농산물

역시 EU 역내 생산 농산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산 식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T 파리지사에 따르면, 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기준으로 2025년 들어 12월 17일까지 집계된 한국산 식품의 통관 부적합 사례는 총 13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건미역의 아이오딘 함량 기준치 초과 및 표시 미비, 음료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헤이즐넛, 대두, 우유) 강조 표시 미흡, 라면 등 면류 제품에서의 미네랄오일 포화탄화수소(MOAH) 함량 기준 초과 등이 있다.

aT 파리지사는 최근 RASFF에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미역과 면류, 음료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 성분 기준 초과나 표시 미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EU는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사용, 특정 성분 기준, 알레르기 유발물질 강조 표시 등에서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국내 수출업체들은 EU 규정과 한국 기준 간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성분 사용, 표시 사항, 원료 관리, 공급망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KOTRA, 80개국 302개소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 기업 모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원활하게 수출 물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물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KOTRA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참여기업 모집은 12월 23일까지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 80개국 302개소 물류 거점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보관부터 배송까지 수출 물류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이며,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KOTRA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지 창고에 물품을 미리 보관하는 ‘안전재고’를 활용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기 지연을 예방하고 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단순 보관뿐 아니라 입·출고, 포장, 라벨링, 통관, 반품 처리 등 물류 전 과정을 현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위한 B2C 물류 서비스뿐만 아니라 K-소비재 물류데스크 10개소를 신설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뷰티·식품·패션 등 K-소비재 품목 대상 물류 서비스도 강화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2월 23일까지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 부과와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은 매년 관련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호를 통해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을 요약·정리해 소개한다.

원가가산법으로 산정된 이전가격, 관세평가에서는? - CPM과 관세평가 제5방법의 실무적 조화 방안 -

곽 만 제 | 윈스탑관세법인 관세사

이 지 영 | 관세법인 정상 관세사

I. 서론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장과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형 생산체계가 보편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기업 내부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전가격(Transfer Price)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위험을 수반한다.¹⁾ 특히 이전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과소 신고돼 관세가 축소되며, 반대로 과대 설정 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이 ‘독립기업 간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 및 관세 양 측면에서 핵심적인 검증 과제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제34조(제5방법)는 제조원가에 ‘수출국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한 산정가격(Computed Value)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²⁾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하나로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을 규정한다. CPM은 제조원가에 정상적인 이윤을 가산해 이전가격

1)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22, p. 17.

2)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Article 6

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에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³⁾ 「관세법」상 제5방법과 「국조법」상 CPM은 모두 원가에 이윤을 가산한 구조를 기초로 하지만, 적용 목적과 평가 단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실무상 조세당국과 관세당국의 판단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CPM에 의해 이전가격이 결정된 경우, 해당 가격이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고, 나아가 제5방법 적용 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제도 및 이론적 배경

1. 「관세법」 제34조와 「국조법」상 CPM의 비교

「관세법」 제34조(산정가격)와 「국조법」상 CPM(원가가산법)은 모두 과세당국 입장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두 제도는 세부적인 운용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관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동종·동류의 물품’이라는 물품의 물리적 유사성이다.⁴⁾

반면, 「국조법」상 CPM은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 건설,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에 ‘원가 기준 통상이익률’을 가산하는데, 이때 통상이익률은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위험 부담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률을 의미한다.⁵⁾ 즉, 「관세법」은 ‘물품의 동질성’을, 「국조법」은 ‘기능의 유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관세법」상 산정가격(제5방법)	「국조법」상 원가가산법(CPM)
물품	동종·동류 물품 (물리적 특성 중시)	물품 자체보다 거래 중시 (거래 기능, 위험 유사성 중시)
비교 대상	해당 물품의 수출국 내 생산자	수행 기능 및 위험이 유사한 제3의 거래
산출 공식	제조원가+이윤 및 일반경비+운임 등	원가×(1+원가기준 통상 이익률)
주요 관점	행정적 성격(개별 물품 단위)	산출 명시적(기업 전체 이익률 분석)

3) 관세청,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관계분석 연구>, 2021, p. 45.

4) 「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III. 원가가산법 이전가격과 「관세법」상 특수관계 영향 판단

다국적 기업이 CPM을 통해 이전가격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관세당국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관한 주요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관세당국이 CPM 적용 가격을 검증하는 핵심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1. 주요 판례 분석

가. 국심2007관0045 : 거래 조건 및 이윤 회복 적정성

청구법인은 모회사(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제조원가에 15%의 마진율을 더한 CPM으로 결정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보다 약 20~30%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거래가격이 모든 비용과 전반적인 이윤 회복을 보장할 만큼 적절함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를 인용했다. 또한 수출자가 전 세계 특수관계사 평균 매출총이익률(13.2%)보다 높은 13.7%를 실현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례는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총비용 회수와 이윤 획득’이라는 CPM의 본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나. 조심2008관0126 : 원가의 포괄성 및 비교 물품의 적합성

청구법인은 제조원가에 20% 이윤율을 가산한 가격을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판매관리비가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교 대상 물품이 적절하지 않다며 과세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 물품은 시제품이거나 대량생산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종·동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관세법」상 동종업계의 통상 이윤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는 CPM 적용 시 원가 항목의 포괄성과 비교 대상 물품의 엄격한 동질성(동종·동류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⁶⁾

다. 조심2015관0013 : 가격 결정 과정의 독립성

청구법인은 매년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해 마진율을 사후적으로 조정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행위가 독립된 거래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식(Arm's Length)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의한 인위적 조정이 개입됐다고 봐 제1방법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수출자의 이윤율이 연결재무제표상 평균 이윤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정상적인 이윤

6) 조세심판원, 조심2008관0126, 2009.3.20. 결정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CPM 검증 시 단순 수치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을 명확히 했다.⁷⁾

라. 조심2017관0133 : 임의 조정 요소(MCP)와 일관성

제조원가에 마크업 5%를 더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한 임의 조정 요소인 MCP(Market Competition Price)를 가감해 가격을 신고한 건이다. 심판원은 MCP가 객관적 산출 근거 없이 내부적 이익 조정을 위해 사용됐으며, 표준원가가 변동함에도 거래가격이 고정되는 등 가격 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이는 원가가산법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는 임의적 조정 요소가 개입되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2. 소결

위 판례들을 종합할 때, CPM 기반 이전가격이 관세평가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가격 결정 과정의 독립성(Independence) : 본사의 일방적 지시나 사후적 목표 이익 맞추기가 아닌, 독립 당사자 간 합의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원가 포괄성 및 이윤 회복의 적정성(Cost Recovery & Profitability) :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이 누락 없이 포함돼야 하며, 가산된 이윤율이 산업 평균이나 기업 전체 수준과 현저한 괴리가 없어야 한다.
- ③ 비교대상 자료의 적합성(Fitness of Comparables) : 국세 목적의 ‘기능적 유사성’을 넘어 「관세법」상 ‘물품의 동종·동류성’을 충족하는 비교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

IV. 「관세법」 제34조 이윤 산정 방안 및 제언

CPM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인될 경우, 관세당국은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제5방법(산정가격)이 적용될 때, 가장 큰 쟁점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국세 목적의 이전 가격 자료를 「관세법」 제34조 목적에 맞게 전환해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언한다.

7) 조세심판원, 조심2015관0013, 2015.8.21. 결정

1. 거래 유사성 요소의 재검토

국세의 정상가격이나 APA(정상가격 사전승인) 자료는 거래의 유사성을 기초로 작성된다. 이를 「관세법」 제34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수출국 내에서의 판매, 대리점 거래 등 「관세법」이 요구하는 거래 단계 및 형태와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정량적 조정을 거쳐야 한다.

2. 물품 유사성 요소 : KSIC 및 HS Code 활용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범위다. 국세 자료는 포괄적인 제품군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를 「관세법」상 ‘동종·동류 물품’ 요건에 맞추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HS Code(6단위 또는 10단위)를 교차 적용해 비교 대상 기업을 필터링(Filtering)해야 한다.

3. 이윤 특성 요소 : 국세 이윤 특성 사용

「관세법」 제34조의 이윤에 대해서는 판매 시점의 통상적인 이윤이 원가 기준인지, 목표 수익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적정성을 파악한다. 따라서, 국세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했던 이윤의 특성(원가기준)을 적용해 이를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원가 기준의 이윤율을 목표 수익률이나 기타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해 정합성을 소명하면 될 것이다.

4. 통상 이윤율의 범위 설정

산출된 이윤율 데이터가 다수일 경우, 사분위수(IQR, Interquartile Range)나 Z-Score 등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고, 중위값이나 평균값을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는 통계적 접근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이는 OECD 이전가격 지침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이며, 관세평가에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⁸⁾

V. 정책 제언

현행 관세평가 실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국세 목적의 자료가 관세당국에 의해 배척되거나, 반대로 관세당국이 산정한 이윤율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해결하

8)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para 3.57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1. ACVA & APA 사전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관세청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와 국세청의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s)을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무상 활용도는 높지 않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전조정심의위원회(가칭)’를 활성화해, 납세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관세와 국세의 평가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적 구축력을 강화해야 한다.⁹⁾

2. 「관세법」 제34조 통상 이윤율 산정 절차 명시화

현재 「관세법 시행령」 및 고시는 제34조 적용 시 ‘통상의 이윤’을 산정하는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동종·동류 업체의 선정 기준(KSIC, HS Code 활용), 이윤율의 정의(매출총이익률 기준), 통계적 범위 산정 방식(IQR 등)을 고시에 명문화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3. 통상 이윤율 기준표의 제정 및 적용

과거 폐지됐던 ‘이윤 및 일반경비율표’의 취지를 살려, 현대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한 ‘산업별 통상 이윤율 기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수입신고 자료와 국세청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결합해 산업별, 품목별(HS Code별) 표준 이윤율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 이를 강제 규정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때 적용할 수 있는 ‘Safe Harbor(세이프 하버)’ 규정으로 운용한다면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원가가산법(CPM)을 적용한 이전가격이 관세평가상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가격이 부인될 경우 「관세법」 제5방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9) 관세청, <ACVA 제도 가이드북>, 2020, p. 36

연구 결과, CPM 기반 거래가격이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세청의 정상가격 범위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① 가격 결정 과정의 독립성, ② 원가의 포괄성, ③ 비교 대상 물품의 동질성이라는 관세평가 고유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거래가격이 부인돼 제5방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 기존의 국세 이전가격 자료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관세평가 목적에 맞게 재가공(Conversion)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HS Code와 KSIC를 연계한 비교 대상 선정, 이윤의 특성 고려,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한 이윤의 범위 산정 등이 그 실무적 해법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준들이 실무에 적용된다면, 국제조세와 관세평가 간의 해석 간극(Gap)을 줄이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과세관청의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본사와 내부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관세평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 부과와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은 매년 관련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호를 통해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을 요약·정리해 소개한다.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중심 CBP 품목분류 사례연구

이 득 렬 |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

I. 연구 배경 및 목적

2025년에 접어들어 대미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및 관세인상 수입조정(이하 품목관세)을 진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 현지 추가 정책발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각 기관별 대응방향 모색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있어 HTSUS 기준 어느 품목에 대해, 얼마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것인가를 각 대상국가별로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미국 관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 미국 관세정책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추후 몇 년 내에 미국은 적정한 품목분류가 이뤄졌는지, 적정하게 원산지가 판정됐는지 대대적인 검증·조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 이슈는 목전의 미국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절차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세관국경 보호국(CBP) 조사·검증까지 포괄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품목분류는 품목관세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원산지 판정은 품목관세 부과대상이 확정된 후 적용세율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품목분류는 원산지 판정보다 더 선행해야 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판례주의의 국가인만큼 유권해석 및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단순 품목분류 규정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CBP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HS Code를 중심으로 CBP가 제시하는 품목분류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사전심사제도(e-ruling)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품목분류 관점에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관련 규정

1. 미국 HTSUS 통칙 추가규정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는 세계관세기구(WCO) HS협약을 기본으로 하되, 미국 관세율표 추가 해석 규칙(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이하 'AUSRI's') 및 미국 국내주(Additional U.S. Notes), 통계주석(Statistical Notes)과 같은 일부 미국 고유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관세율표 통칙(GRI,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의 경우 품목분류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므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 모든 품목분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AUSRI'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RI를 보충하는 미국 국내 규정으로 이 역시 미국 품목분류 전반에 적용돼야 할 규정이다. 미국 HTSUS 해석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면 관세율표 전체에 걸쳐 AUSRI's 규정이 적용된다.

●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a)~(c) ●

구분	내용
AUSRI's 1.(a)	주된 용도(principal use)의 정의
AUSRI's 1.(b)	실제 용도(actual use)의 입증책임
AUSRI's 1.(c)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 적용원칙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품목분류 관련 주요 규정

제87류에는 제16부에 해당하는 특정 기계를 제외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된다. 그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대상 HS Code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CBP에서는 다음 규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품목분류 관련 CBP 주요 인용규정 ●

구분	규정	인용 내용
완성차	제87류 해설서, 제87류 주 제3호	불완전·미완성 차량의 완성차 분류요건
	제8704호 해설서	제8704.10호 덤퍼(Dumper)의 분류요건
	제8709호 해설서	제8709호 자주식 작업차 분류기준(최고시속, 선회반경)
	제8703호, 제8704호 해설서	삼륜자동차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 분류요건
자동차부품	제17부 주 제2호	제17부 제외규정
	제17부 주 제3호	제17부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요건
	제16부 주 제1호	제16부 제외규정
	제16부 주 제2호	제16부 물품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기준

III. 용도에 따른 분류사례

CBP에서는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09호에 분류되는 완성차는 용도에 따라 분류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미국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부과대상 HS Code 130개는 주로 자동차용 부품으로 특계된 세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인가’에 대한 판단은 품목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계세번은 분류에 앞서 호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호의 용어가 주된 용도(principal use)로 해석되는지, 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에 적합(suitable for use)하다고 해석돼야 하는지에 따라 품목분류 분석포인트 및 인정되는 입증자료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1. 주된 용도(principal use)에 대한 판단

주된 용도(principal use)란 주입물품이 속하는 종류(kind)나 계열(class)의 물품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의미한다. HQ 965373 결정에서는 해당 규정의 주된 용도(principal use)에 대해 다른 어떤 단일 용도보다 우세한 용도(the use which exceeds any other single use)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정 단일 용도가 다른 용도보다 우세함은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이러한 입증책임은 용도를 입증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미국 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주된 용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1) 물리적 특성, (2) 상품이 이동하는 채널 종류 또는 무역 종류, (3) 최종 구매자의 기대, (4) 판매환경, (5) 종류를 정의하는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6) 그렇게 사용하는 경제적 실용성, (7) 무역에서 이러한 사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된 용도를 결정할 것을 판시¹⁾하고 있다.

1) United States vs Carborundum Co536 F.2d 373, 375(197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서 주된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 CBP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1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품의 기능 및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쟁점물품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회로도나 같은 자료, 그리고 불완전·미완성 물품이더라도 이러한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CBP는 시장수요, 마케팅 자료를 활용한 실제 사용사실(substantial actual use)은 자동차부품이라는 주된 용도에 대한 증거에 있어 우선순위가 물리적 특성보다 후순위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2. 특정 용도 적합성(suitability for use)에 대한 판단

미국 법원과 CBP는 특정 용도에 적합한 것(suitable for use)을 주된 용도(principal use)와 구분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미국 법원 판결에서는 특정 호의 용어에 명시된 특정 용도에 적합한 것(suitable for use)이라는 용어를 어떤 용도에 ‘적합하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actual), 실질적으로(practically), 그리고 상업적으로(commmercially) 그 용도에 적합함이 입증돼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독점적 사용(sole use) 또는 주된 사용(principal use) 수준의 증거는 요구되지 않으나, 해당 용도에 따른 실질적 실제 사용(substantial actual use)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²⁾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CBP는 주된 용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물품의 설계 및 특징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이전 행정심판, 브로셔와 같은 물품 설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거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특수용도차량의 분류사례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이 분류되는데, 특수용도가 차량의 ‘운송’ 기능보다 우선적이고 독립적인 특수기능이 분명해야 제8705호에 분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HQ 951935 사례 쟁점물품은 건설현장에서 건식자재를 컨베이어 벨트로 취급하는 특수기능을 갖췄고, HQ 954178 사례에서는 분무를 함으로써 도로 등을 청소하는 특수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CBP는 HQ 083669 사례에서 파쇄 기능을 폐지 운반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으로, HQ 961688 사례에서 연료의 주입은 운송된 연료의 하역 성격인 연료 운송의 보조적인 기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BP는 제8705호에 대해 차량의 특수제작 또는 개조 여부와 상관없이, 주행·운송기능과 독립적인 특수기능이 분명해야 이러한 특수목적이 주요 기능(primary function)으로 인정돼 제8705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United States vs F.W. Myers & Co.,Inc., C.D.(1973)

IV. HTSUS에 대한 일반적·상업적 해석

품목분류 규정은 모든 물품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HTSUS와 해설서에 정의돼 있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이고 상업적 의미에 따라 해석돼야 함³⁾을 원칙으로 한다. CBP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업적 의미로 해석하고자 사전이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에서 CBP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메리엄-웹스터 사전(Merriam-Webster: America's Most Trusted Dictionary)이다. 그 외에도 콜린스 사전, 엔지니어링 사전(Engineering dictionary), Road&Track Illustrated Automotive Dictionary 등이 주로 활용되며, 이렇게 인용된 일반적·상업적 정의는 품목분류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한 전제로 주로 활용된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정의 인용 외에도 구체적인 최고시속, 압축비 등의 수치적인 기준을 인용해 품목분류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 기준을 보완하기도 한다. HQ 952670 사례는 쟁점물품을 팬(fan)과 압축기(Compressor)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었는데, 품목분류 규정 및 해설서에는 팬과 압축기는 작동 압력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을 시사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압력의 수치기준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CBP는 Van Nostrand's Scientific Encyclopedia(1963)의 송풍기 용어 정의를 인용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CBP는 제8703.10호 분류에 있어 주로 공공도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⁵⁾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로 사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기준을 관세율표 해설서와 함께 참고하고 있다.

NHTSA에서는 골프카트를 골프 코스 내 사용되기 위해 제조된 차량으로, 간헐적·보조적으로 공공도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돼,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고시속 20마일 이하라는 사실이 무조건 제8703.10호에 분류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시속 기준을 포함한 NHTSA의 저속차량의 기준은 CBP가 품목분류를 위해 공공도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일부이며,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3) Nippon Kogaku (USA) Inc. v. United States, 69 CCPA 89, 673 F.2d 380(1982) 등 다수 판례

4) 제8414호 해설서 : (B) 팬(fan);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 ... <후략>

5) 주로 공공도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없다.

V.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기준

CBP는 품목분류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거 CBP 유권해석 및 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특정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인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이므로, 이러한 부분품 품목분류 일반원칙을 사례와 함께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1. 부분품(parts)의 정의

HTSUS 규정에는 부분품(part)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CBP에서는 이러한 부분품의 정의에 대한 미국 C.C.P.A.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인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다음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 (1) **Willoughby test** : 수입된 품목이 결합될 대상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통합적(integral)’, ‘구성적(constituent)’, 또는 ‘구성요소적(component)’ 부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⁶⁾
- (2) **Pompeo test** : 수입된 품목이 해당 물품과의 사용에만 전적으로 전용(dedicated solely for use)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⁷⁾

위에서 언급한 Willoughby test와 Pompeo test는 CBP에서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에서 품목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인데, 중요한 점은 부분품으로서 결정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⁸⁾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물품이 별개의 물품이고 독립적인 상업적 실체를 갖춘 물품(a separate and distinct commercial entity)이라면 이는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⁹⁾

2. 부속품(accessory)의 정의

HTSUS에서는 부분품과 마찬가지로 부속품(accessory)에 대한 정의 역시 제시하지 않는다. HQ 087704 결정에서는 이러한 부속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부속품의 정의는 많은 CBP 사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6) United States v. Willoughby Camera Stores (“Willoughby Camera”), 21 C.C.P.A. 322(1933) p. 324.

7) United States v. Pompeo (“Pompeo”), 43 C.C.P.A. 9(1955) p. 14.

8) Ludvig Svensson, Inc. v. United States, 63 F. Supp. 2d 1171, 1178(Ct. Int’l Trade 1999)

9) Bauerhin Technologies Limited Partnership & John V. Carr & Son, Inc. v. United States**, 110 F.3d 774(Fed. Cir. 1997) p. 779.

An accessory is generally an article which is not necessary to enable the goods with which it is used to fulfill their intended function. An accessory must be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solely or principally for use with a specific article. Accessories are of secondary or subordinate importance, not essential in and of themselves. They must, however, somehow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al article(e.g., facilitate the use or handling of the principal article, widen the range of its uses, or improve its operation).

이 정의를 종합해보면, ① 본품의 기능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② 본품과 함께 사용되도록 전용 또는 주로 의도돼야 하며, ③ 부속품의 기능이 본품 기능에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④ 본품의 효율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분류기준을 추론할 수 있다.

3. 부분품의 부분품 분류원칙

CBP에서는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특정 부분품의 일부는 전체의 부분품이 아니라 부분품의 일부로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된다는 원칙¹⁰⁾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부품이 부분품 및 부속품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8708호 자동차 부분품 세번에 분류할 수는 없다.

VI. 불완전·미완성 물품 분류에 대한 사례 검토

1. 불완전·미완성 차량의 완성차 분류기준

CBP는 불완전·미완성 차량에 대해 수입되는 시점에 완성차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HQ 956538 결정사례에서 제시한 방향을 준수하고 있다.¹¹⁾ CBP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대한 구체적 해석으로, 수입된 구성요소가 자동차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필수기능을 갖춘 상태여야 하며, 미조립 상태에서는 특정 차량으로 조립되도록 의도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고부품으로 봐 각각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으며,¹²⁾ 외관상 완성된 자동

10) "a part of a particular part is more specifically provided for as a part of the part than as a part of the whole."- C.F. Liebert v. United States, 287 F. Supp. 1009(1968)

11) In interpreting the HTSUS, we have construed the term "essential character" to mean the attribute which strongly marks or serves to distinguish what an article is; that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structure, core or condition of the article.

12) HQ 083222

차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거나, 엔진이나 배터리가 있더라도 연소를 할 수 없어 주행을 위한 동력발생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면 자동차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 불완전·미완성 자동차부품의 완성차 분류기준

모든 종류의 자동차부품에 CBP 결정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품도 각각 특성이 상이하지만, CBP는 적어도 자동차부품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 보유 여부에 있어 쟁점물품 자체가 완성된 부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1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쟁점물품이 완성품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완성품의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외관상 완성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완성품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통칙 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VII. CBP 분류사례 시사점 및 e-ruling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CBP 분류사례를 통해 CBP 품목분류 주요 쟁점과 원칙, 분류기준 해석 및 적용, 분류기준 충족에 대한 인정되는 증거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CBP 분류사례에서 시사하는 부분과 향후 e-ruling 진행에 있어 무게중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방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품목분류 원칙에 대한 법원 판결 인용

CBP는 품목분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이를 분류원칙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부분품에 대한 Willoughby test와 Pompeo test, 부속품의 정의, 부분품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해석, 용도에 대한 주된 용도 또는 특정 용도 적합성에 대한 접근과 이러한 호의 용어 해석 등의 개념은 모든 품목에 대한 CBP 품목분류의 일반원칙으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e-ruling을 위한 품목분류 논리수립에 있어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른 분류원칙을 품목분류 규정과 동일한 1순위 원칙으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상업적 해석에 대한 적극적 활용

CBP는 상기 법원 판결과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인용해 품목분류 규정을 보완한다. 메리엄-웹

스터 사전과 같은 일반적 해석을 인용하거나, Van Nostrand's Scientific Encyclopedia(1963)와 같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자료를 토대로 상업적 해석을 인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품목분류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물품의 정의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과 같은 미국 내 관련규정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분류기준을 제안할 수 있는 논리 전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용이 기존 품목분류 규정의 분류요건 및 취지에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증거자료 선별 기준

CBP는 호의 용어 및 주규정, 해설서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 판결 인용 및 일반적·상업적 해석으로 분류기준을 구체화해 제시하는데, 이렇게 수립된 분류기준에 따라 CBP가 인정하는 증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호의 용어가 주된 용도 또는 특정 용도 적합성 중 어떠한 개념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증거자료가 달라지고, 단순 근거리용으로 판매되고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8703.10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없어야 잔여 호에 분류되는 것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분류원칙에 대해 타 사례에서 인정된 자료의 성격은 무엇이고, 불인정된 증거자료의 성격은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II. 결론

지금까지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CBP의 품목분류 분류기준을 살펴봤다. 품목분류 규정을 보충하고자 CBP가 인용·수립한 분류원칙을 선별하고, 이러한 분류원칙별 주요 사례를 검토했는데, 이러한 귀납적인 분류원칙 추론이 모든 분류기준을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확인된 CBP의 품목분류 맥락은 e-ruling의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각 사례들이 해당 분류원칙에 의해서만 품목분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품목분류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므로, 각 사례들은 쟁점물품의 특성과 관련 품목분류 규정,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참고사항들을 토대로 결정됐으며 추후 e-ruling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논리를 전개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러한 관세 부과대상 품목분류를 접근함에 있어 수출 또는 수출 예정 물품에 대해 자동차 25% 품목관세, 철강 등 50% 품목관세, 또는 상호관세 15% 부과 중 어느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와 같은 절세전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나친 절세목적의 접근은 추후 조사·검증에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면서, 추정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처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품목분류 전략은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CBP는 증거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CBP는 CBP가 제시한 품목분류 규정의 해석 및 적용, 그 밖의 분류기준 제시에 대해, 쟁점물품이 이러한 규정과 분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품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결정한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동의 또는 반박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가 제출됐는지, 제출됐다면 이러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력을 갖는지, 증거력을 갖는다면 CBP의 품목분류 견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해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향후 e-ruling 진행에 있어 어떠한 품목분류 원칙과 규정에 근거해 특정 세번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다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CBP가 인정하는 증거의 종류(물품의 기능과 설계에 무게중심을 맞춰야 하는지, 또는 마케팅 자료나 타 법규정도 인정 가능한 분류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등)를 선정하고, 이러한 증거가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통관 / 재수출면세

제품 수리를 위해 한국으로 수입한 뒤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리를 위해 일시수입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해외 수리요청자에게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수리요청자의 관리하에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감면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품목분류 / 젤리스틱의 HS Code

자두 콜라겐 젤리스틱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은 대략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의 '기타'로 봐 제2106.90-9099 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1) 식탁용 크림·젤리·아이스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 조용의 가루(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2007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b) 젤라틴(gelatin)·설탕과 과실주스나 인조 과실 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제2106호)"를 예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품목번호	품명
216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90	기타
90	기타
9099	기타

원산지 / 원산지 표시

**스코틀랜드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Made in Scotland'라고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2024.3.8.)되며 원산지표시 인정범위에 지역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삭제됐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의 증가요청으로 인한 표시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국가명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6항 제5호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삭제).

따라서 문의하신 원산지 표시방법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Made in UK', 'Made in GB'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통관 / 건강보조제 해외 직구

소화기능과 관련된 건강보조제는 몇 병까지 해외 직구 가능할까요?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일반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입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면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CITES 규제물품(예 :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물품 등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수량이어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해성분 포함 및 국내 반입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번거롭더라도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식약처 종합민원센터(1577-1255)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1577-1255
- * 수입식품정보마루 상담센터 1811-6496

보세화물 / 신고지연 가산세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33일이 지난 후에 보세운송을 했습니다.
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3항에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 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①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영 제247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세구역 별표 1에 반입된 물품

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나. 부산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컨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다. 부산항의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라.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2.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 <중략> ...

④ 보세운송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세구역 간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종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제1항 제1호 물품 : 별표 1의 보세구역

2. 제1항 제2호 물품 : 모든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장소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춰 볼 때, 보세운송 절차에 의해 별표1(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보세구역 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종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합산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만약 보세운송된 후 다시 장치된 보세구역이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 방식·구조 따라 다른 변성전분의 품목분류

최 민 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I. 개요

관세행정에서 전분과 변성전분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혼선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제를 꼭 정리해 보고 싶었다. 특히 동일한 원료에서 출발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가공 방식과 구조의 변성 정도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물품이므로 배경지식을 넓히는 것은 물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업무에서 전분인지 어떤 종류의 변성전분인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전분의 변성 과정에 예외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도 있었다.

이번 호에는 변성전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해 보려고 한다.

II. 변성전분

1. 전분과 변성전분의 특징

전분은 옥수수, 감자, 밀, 타피오카 등의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 그대로 전분으로 가열하면 물을 흡수해 팽윤하고 점도를 형성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전분은 높은 온도나 산·알칼리 조건에서 쉽게 점도가 파괴되고 냉각하면 젤이 굳어지거나 물이 분리되는 등 가공·저장 중 품질 변화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강한 교반이나 냉동·해동 과정에서도 점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전분과 변성전분 ●



(좌) 타피오카 전분 (우) 타피오카 변성전분

반면 변성전분은 이러한 전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또는 효소적 방법으로 구조를 변성한 전분을 말한다. 에테르화·에스테르화·가교화 같은 화학적 처리나, 예열·건식가열·압출 처리 등 물리적 변형을 통해 전분의 성질을 조절하며 그 결과 높은 열안정성, 냉동·해동 안정성, 산성 조건 안정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저장 중 전분의 노화가 억제돼 점도 유지력이 좋아지고 식품의 질감·광택·수분 유지력 등이 크게 향상된다. 이 때문에 변성전분은 소스, 수프, 냉동식품, 젤리, 제과·제빵, 제약 바인더, 제지 코팅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2. 전분의 변성 과정

전분의 변성(modification) 과정은 천연 전분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분의 분자 구조나 물리·화학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변성 과정을 통해 전분은 점도 안정성, 내열성, 내산성, 보관성, 접착성 등 다양한 기능이 향상돼 식품, 제지, 섬유, 접착제 산업 등에서 더 넓게 활용될 수 있다.

전분의 변성은 크게 물리적 변성, 화학적 변성, 효소적 변성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은 전분 입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의 양상과 결과가 다르다.

가. 물리적 변성 과정

물리적 변성은 전분에 열, 압력, 전단력, 수분 조절 등을 가해 전분 입자 구조를 재배열하거나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다. 먼저 전분에 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한 뒤 열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전분의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수소 결합이 느슨해지며 입자의 결정성이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전분은 팽윤(swell)하거나 부분적으로 젤라티니제이션(gelatinization)이 일어나 점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냉수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 천연 전분과 달리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zed) 전분은 물만 닿아도 쉽게 풀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변성전분은 식품분야에서 즉석 소스, 냉동식품 안정제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나. 화학적 변성 과정

화학적 변성은 전분 분자 내 -OH기(하이드록실기)에 화학적 반응을 가해 전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1) 산·알칼리 처리(Degradation)

산을 가하면 전분의 글루코사이드 결합이 부분적으로 절단돼 저점도 전분이 된다. 알칼리를 처리하면 아밀로오스 사슬이 더 잘 풀리고 점성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긴다.

2) 가교결합(Cross-linking)

인산염, 아디프산 등과 반응해 전분 사슬들 사이에 화학적 다리(cross-link)를 형성시키는 과정이다. 가교결합이 이뤄진 전분은 내부 구조가 단단해져 열, 산, 전단력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향상되며, 가열 시 점도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특성을 유지한다.

3) 치환 반응(Substitution)

하이드록실기에 아세틸기($-\text{COCH}_3$), 하이드록시프로필기 ($-\text{OCH}_2\text{CH}(\text{OH})\text{CH}_3$) 등의 치환기를 도입하면 전분 분자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전분은 냉동·해동 후에도 겔이 쉽게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이로써 냉동 파이, 소스류, 디저트 등에서 물성 안정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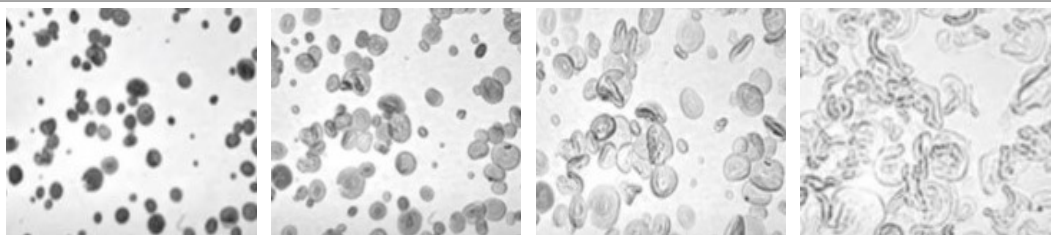
4) 산화(Oxidation)

전분을 차아염소산 등으로 산화시키면 사슬 일부가 절단되고 카르보닐기·카복실기가 생성된다. 이 과정으로 전분의 점도는 낮아지고 백색도는 증가해 제지 산업 등에서 유용하다.

다. 효소적 변성 과정

효소 변성은 아밀라아제,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특정 효소가 전분의 글루코스 결합을 선택적으로 절단해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효소는 특정 위치만 골라 절단하기 때문에 화학적 변성보다 정교하며 부가 물질이 남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전분은 저분자화되거나 구조가 느슨해져 용해도와 점도가 변화된다. 당화 시럽, 말토덱스트린, 특수 기능성 전분 제조에도 사용된다.

● 전분의 변성 과정 ●



3. 변성전분의 종류

전분은 물리적 변성, 화학적 변성, 효소적 변성 등의 변성 과정에 따라 전분 입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

가. 덱스트린과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린은 전분을 가열하거나 산 또는 효소로 부분 분해해 얻는 저분자 탄수화물의 혼합물이다. 분해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분자량의 다양한 조각이 섞여 있다. 물에 잘 녹고 점착성이 있으며, 약간의 갈색을 띠기도 한다. 즉, 덱스트린은 전반적으로 느슨하게 분해된 전분 혼합물에 가깝다. 이에 반해 말토덱스트린은 전분을 α -아밀라아제와 같은 효소로 비교적 정밀하게 분해해 얻는 물질로 주로 포도당 3~20개 정도가 연결된 올리고당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 중 덱스트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전분의 분해[산(酸)이나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 이하의 것에 한정하여 덱스트린으로 여기에 분류하며”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10% 이하인 물품’에 한해서 덱스트린으로 분류한다.

구분	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분자 구성	불균일한 전분 파편의 혼합물	비교적 균일한 올리고당
맛	거의 무맛 ~ 약한 구수함	약간의 단맛 또는 무맛
점착성	점착성이 강함 → 접착제 기능	점착성 낮음
용해성	물에 잘 녹지만 점도 변화 큼	물에 매우 잘 녹고 점도 안정
주요 용도	접착제·제지·코팅	식품·영양·제약

나. 배소전분

배소전분(Roasted Starch)은 전분을 건조한 상태에서 가열해 전분 분자 구조를 부분적으로 분해·변형시킨 변성전분의 한 종류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20~200℃ 정도의 온도에서 산 촉매(예 : 소량의 염산)를 첨가하거나 단순히 무촉매로 가열해 이뤄진다. 배소 과정 동안 전분의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고분자 사슬이 절단되면서 분자량이 감소하고 점도가 낮아지며 수용성이 많이 증가한다. 그 결과 배소전분은 가루 상태에서도 색이 약간 황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고, 물에 쉽게 분산되며, 일반 전분보다 부드럽고 점착력이 우수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식품 산업에서는 증점제, 광택제, 안정제 역할을 하며, 태백용 테이프나 골판지 제조에 쓰이는 접착제의

주요 원료로도 널리 활용된다. 또한 제약, 섬유, 제지 분야에서도 코팅성 향상, 접착성 부여, 필름 형성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다. 가용성 전분

가용성 전분(Soluble Starch)은 물에 더 잘 녹을 수 있도록 가공한 형태의 전분으로 일반적인 천연 전분보다 용해성과 투명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보통 감자나 옥수수에서 얻은 전분을 산처리하거나 열·수분 조건을 조절하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분자구조를 부분적으로 분해해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전분의 긴 아밀로오스·아밀로펙틴 사슬이 짧아지면서 물에 분산되기 쉬운 형태가 되고 그 결과 용해도가 향상된다. 가용성 전분은 찬 물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용해되며, 점도가 안정적이고 응고나 침전이 적기 때문에 실험 분석, 식품, 제약, 접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라.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Pre-gelatinized Starch) 또는 스웰링 전분(Swelling Starch)은 전분을 사전에 가열·겔화시킨 뒤 건조해 다시 분말 상태로 만든 전분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일반 전분이 물에서 익어야만 점도가 생기는 것과 달리 찬물에서도 쉽게 팽윤하고 점도를 낼 수 있도록 가공한 전분이다.

전분을 물과 함께 가열하면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이 풀어지면서 전분 입자가 팽윤·파괴돼 겔 구조가 형성된다.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은 이 과정을 공장에서 미리 수행한 뒤 건조·분쇄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 시 별도의 가열이 필요 없다.

마. 에테르화 전분

에테르화 전분은 전분의 하이드록실기(-OH)에 에테르기를 도입해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한 변성전분이다. 전분을 알칼리 조건에서 에폭시 화합물이나 알킬 할라이드 등과 반응시키면 전분 분자 사슬에 새로운 치환기가 결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분의 열안정성, 전단 안정성, 냉동·해동 안정성 등이 크게 향상된다. 이러한 변성 과정은 전분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약화시키고 수화 능력을 높여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도 겔이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해준다. 그 결과 에테르화 전분은 수프, 소스, 냉동식품과 같이 점도 유지와 안정성이 중요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제약·제지·섬유 산업에서도 점도 조절제나 바인더로 활용된다.

바. 에스테르화 전분

에스테르화 전분은 전분 분자에 아세틸기나 아디프산기 등 에스터기를 도입해 전분의 노화(retrogradation)와 응고를 억제한 변성전분이다. 전분의 하이드록실기가 산무수물 또는 유기산과 반응해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전분 입자는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에스테르화 전분은 특히 저장 중 전분이 굳어지거나 수분이 빠지는 현상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젤리·드레싱·소스 같은 산성 식품이나 냉동 디저트류의 품질 유지에 유리하다. 또한 투명도와 점성의 부드러움이 뛰어나 식품의 질감을 한층 개선하며, 제과·베이커리 제품은 촉촉함과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III. 경합세번

전분을 가공 공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변성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증명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변성전분의 품목분류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한다.

1. 덱스트린 팔미테이트(Dextrin palmitate)

덱스트린 24%와 팔미트산 76%를 촉매제로 사용해 에스테르화 반응을 시켜 제조한 덱스트린 팔미테이트로서 백색 분말상을 제2915호, 제3505호 또는 제3824호에 분류할지 여부

2. Partially Pregelatinized Maize Starch

옥수수 전분을 일부 열처리한 백색계 분말상으로 제1108호의 전분으로 분류할지 제3505호의 변성전분으로 분류할지 여부

3. Oxidized Starch Acetate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 및 에스테르화한 백색 분말상의 변성전분을 제3505호 중 에스테르화 전분으로 분류할지, 산화전분으로 분류할지 여부

4. Chemical preparations; CASSAVA SAND FOR CATS

카사바 분말 75%, 옥수수 분말 10%, 실리카겔 15%를 혼합해 조제한 미황색계 파쇄상을 제3824호 또는 제1108호에 분류할지 여부

품목번호		품명	세율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		전분	
11	0000	밀로 만든 것	W1 8% W2 50.9%
12		옥수수로 만든 것	
	1000	식품용	W1 1.8% W2 226%
	9000	기타	W1 1.8% W2 226%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70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양허 5.5%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1000	덱스트린	기본 8%
	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기본 8%
	3000	배소전분	W1 8% W2 385.7%
	40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4010	식품용	W1 8% W2 385.7%
	4090	기타	W1 8% W2 385.7%
	50	에테르화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5010	식품용	W1 8% W2 385.7%
	5090	기타	W1 8% W2 385.7%
	90	기타	
	9010	식품용	W1 8% W2 385.7%
	9090	기타	W1 8% W2 385.7%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99	9090	기타	양허 6.5%

IV.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

■ 제1108호 해설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starch)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 옥수수·밀·쌀)·어떤 종류의 지의류·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뿌리[감자·매니옥(manioc)·참뿌리]와 사고(sago)야자의 심(pith)이다.

전분은 백색 무취의 가루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요오드(iodine)를 가하면 진한 암청색을 나타낸다[그러한 경우 붉은 갈색을 가지는 아밀로펙틴 전분(amylopectin starch)은 예외이다]. 편광현미경으로 보면, 낱알이 특징적으로 어두운 편광 교차를 나타낸다. 이들은 냉수에는 녹지 않으나, 그들의 젤라틴화 온도(대부분의 전분이 약 섭씨 60℃) 이상의 가열된 물에서 그 낱알이 분해하여 전분 페이스트를 형성한다. 전분은 다른 호에 분류하는 광범위한 물품이 되도록 상업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예 : 변성전분·복은 용해성 전분·덱스트린·말토-덱스트린·맥아당·포도당). 이들은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산업, 특히 식품·종이·종이가공과 섬유산업에 사용한다.

2. 관세율표 제2915호의 용어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제2915호 해설서

(VII) 팔미트산($\text{CH}_3(\text{CH}_2)_{14}\text{COOH}$)과 그 염(salt)과 에스테르(ester)

- (a) 팔미트산(palmit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 지방에 존재하며 ; 백색의 가루 상태, 광택 있는 결정체나 무색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
- (b) 이들의 주요 염은 다음과 같다.
 - (1) 팔미트산칼슘(calcium palmitate) : 향료에 사용한다.
 - (2) 팔미트산알루미늄(aluminium palmitate) : 식물 방수용과 윤활유 증점제로 사용한다.

수용성 팔미트산염(water-soluble palmitic salt)[예 : 팔미트산나트륨(sodium palmitate)·팔미트산칼륨(potassium palmitate)과 팔미트산암모늄(ammonium palmitate)]은 비누류(soaps)이나 이 호에 분류한다.

(VIII) 스테아르산(stearic acid)($\text{CH}_3(\text{CH}_2)_{16}\text{COOH}$)과 그 염(salts)과 에스테르(esters)

- (a) 스테아르산(stear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 지방에 존재하며 ; 백색 무정형으로서, 왁스(wax)와 비슷하다.
- (b) 이들의 주요 염은 다음과 같다.
 - (1) 스테아르산칼슘(calcium stearate) : 직물의 방수용으로 사용한다.
 - (2) 스테아르산마그네슘(magnesium stearate) : 바니시(vernish)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 (3) 스테아르산아연(zinc stearate) : 의약·고무와 플라스틱공업에 사용하는 외에도 기름천(oil-cloth)의 제조에 사용한다.
 - (4) 스테아르산알루미늄(aluminium stearate) : 팔미트산알루미늄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 (5) 스테아르산구리(copper stearate) : 플라스터(plaster)의 청동색용과 오염방지제로 사용한다.
 - (6) 스테아르산납(lead stearate) : 건조제로 사용한다.

수용성 스테아르산염[예 : 스테아르산나트륨(sodium stearate)·스테아르산칼륨(potassium stearate)과 스테아르산암모늄(ammonium stearate)]은 비누류(soap)이나 이 호에 분류한다.

(c) 이들의 에스테르(ester)에는 스테아르산에틸(ethyl stearates)·스테아르산부틸(buhtyl stearate)[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로 사용한다]과 스테아르산글리콜(glycol stearate)(천연왁스의 대용품으로 사용한다)을 포함한다.

3.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 제3505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화학물질(예 :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예 :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중요한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

(1) 덱스트린(dextrin),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전분의 분해[산(酸)이나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dextrose)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 이하의 것에 한정하여 덱스트린(dextrin)으로 여기에 분류하며

- 전분을 배소(焙燒)해서(소량의 화학 반응물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상태로) 얻어진다.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배소(焙燒) 전분(roasted starch)이라고 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과 사용하는 전분에 따라 다르며 백색·담황색·갈색의 가루이며 물(필요시 적당히 가열하여)에 녹지만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2)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 전분을 덱스트린(dextrin)으로 변성시킬 때 얻어지는 중간체이며 전분을 물에 끓이거나 냉회석산으로 장시간 접촉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매우 소량의 고령토(kaolin)를 함유하고 있는 가용성 전분도 포함되는데, 주로 종이 제조공업에서 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에 첨가에 사용한다.

(3)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과 ‘스웰링(膨潤 : swelling)’ 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제지·섬유공업·야금(주물용 코어 점결제 조제용)·식품공업·동물사료용 등에 사용한다.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테르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테르화 전분은 원래 제지나 섬유공업에서 사용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변성전분. 예 :

(i) 디알데히드전분(dialdehyde starch)

(ii) 포름알데히드나 에피클로로히드린으로 처리한 전분 : 예 외과용 글루브파우더로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 호의 변성전분은 그 특성[예 : 용액과 겔(gel)의 투명도·젤화하거나 결정화하려는 경향·물과의 결합능력·동결/해동시 안정성·젤라틴화 온도·최고점도]의 변화에 의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 구별될 수 있다.

V. 품목분류

1. Dextrin palmitate

결정 세번	제3505.10-9090호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덱스트린 24%와 팔미트산 76%를 촉매제로 사용해 에스테르화 반응을 시켜 제조한 백색 분말상의 덱스트린 팔미테이트 ○ 용도 화장품의 겔화제
결정 사유	본 물품은 덱스트린과 팔미트산을 에스테르화 반응을 시켜 제조한 덱스트린 팔미테이트로서 화장품 제조 시 겔화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에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호의 HS해설서 (A)에서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 열·화공품(예 :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예 : 인산 디스타치(distarch phosphate)]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 <중략> … 에테르화 전분 및 에스테르화 전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전분구조가 해당 화합물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고, 덱스트린을 구성하고 있는 글루코오스의 수산기(-OH)가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해 팔미트산으로 치환돼 있는 덱스트린의 에스테르화 변성된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3505호 해설서 규정에 부합함.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의 분해생성물인 덱스트린을 팔미트산 등과 에스테르화 반응을 시켜 변성한 물품으로서 전분을 변성시킨 공업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9090호에 분류함.

2. Partially Pregelatinized Maize Starch

결정 세번	제3505.10-4090호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옥수수 전분을 일부 열처리한 백색계 분말상(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 : 약 85.1%) - 제조공정 : Corn starch → Mixer(정제수 분무) → Mill(펠릿화 : 60~107℃, ~7분, 호화 공정) → Dryer → Grinding → Mixer → Screener → Fill drums ○ 용도 의약품 제조용(희석제, 봉해제 등)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40호에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화학

물질(예 :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3)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과 스웰링(膨潤 : swelling) 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및 “일반적으로 이 호의 변성전분은 그 특성[예 : 용액과 겔(gel)의 투명도·겔화하거나 결정화하려는 경향·물과의 결합능력·동결/해동시 안정성·젤라틴화 온도·최고점도]의 변화에 의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옥수수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펠릿화 과정에서 열처리해 전분 입자의 일부를 호화시킨 것으로 그 특성이 옥수수 생전분과는 구별되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 호화시킨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4090호에 분류함.

3. Oxidized Starch Acetate

결정 세번	제3505.10-9090호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 및 에스테르화한 백색 분말상의 변성전분 ○ 용도 - 제지공업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즈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 <후략>’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A)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은 “열·화공품(예 : 산·알칼리)·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해 변성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예 : 인산 디스타치)”으로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전분을 산화제(예 :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와 초산 또는 초산비닐 등에 의해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이므로, 제3505.10호의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에 분류함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HSK 10단위를 판단(전분의 변성방식)함에 있어 본건 물품을 ‘에스테르화한 전분(HSK 제3505.10-50호)’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보면, 본건 물품은 ‘산화(oxidation)’와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분을 변성한 것으로,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 전분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제3505호 해설서에도 ‘산화(oxidation)’와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는 각각 별개의 변성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본건 물품을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한 전분 형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기타의 변성전분’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9090호에 분류함..

4. Chemical preparations; CASSAVA SAND FOR CATS

결정 세번	제3824.99-9090호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카사바 분말 75%, 옥수수 분말 10%, 실리카 겔 15%를 혼합해 조제한 미황색계 파쇄상 ○ 용도 고양이 배변 처리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카사바 분말, 옥수수 분말, 실리카겔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유튜브 촬영부터 군사 장비까지 쓰이는 짐벌(Gimbal)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비틀거리는 산악길 위에서도, 심지어 아이가 뛰어다니는 순간에도 영상은 흔들림 없이 흐른다. 영상·사진 촬영 시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짐벌(Gimbal)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항해 시대에 나침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단순한 회전 장치가 21세기 디지털 영상 혁명과 만나 전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낸 것이다.

오늘날 짐벌은 유튜버의 필수 장비이자, 영화 촬영 현장의 기본 장치가 됐고 드론, 스마트폰, 로봇, 군사용 장비까지 그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기술이 관련 산업을 확장시키며 수출입, 무역 현장에서는 또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다.

“짐벌은 어떤 품목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단순한 액세서리인지, 전자장비인지 혹은 항법·영상 안정화 장치인가?”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짐벌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적 흐름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품목분류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휴대폰용 짐벌(Gimbal)로, 센서, 배터리 등이 내장돼 있고, 3개 축이 모터로 움직이는 3축 짐벌이며, 손잡이 부분에는 조작 버튼 등이 있는 것으로서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9620.00-0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건 (c)의 다음의 이유는 “(i)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iii)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으로 설명하고 있다.

짐벌은 카메라나 장비의 수평을 유지해 주는 회전축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영상물 등 촬영 시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 짐벌 안에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탑재돼 있어 회전 방향이나 기울어짐 등을 측정할 수 있고 모터를 이용해 이러한 회전 및 기울어짐을 상쇄 보완해 항상 수평을 유지하거나 원하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와 함께 결합해 움직임과 관계없이 수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제8479.89-9099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MONOPODS, BIPODS, TRIPODS AND SIMILAR ARTICLES.	9620.00-0000 (FCN2 1.7%)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479.89-9099 (FCN1 0%)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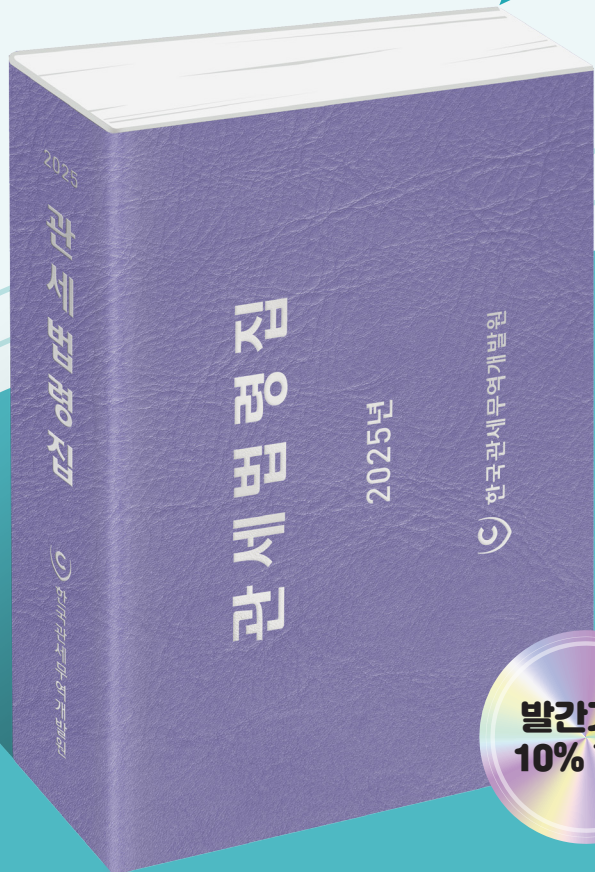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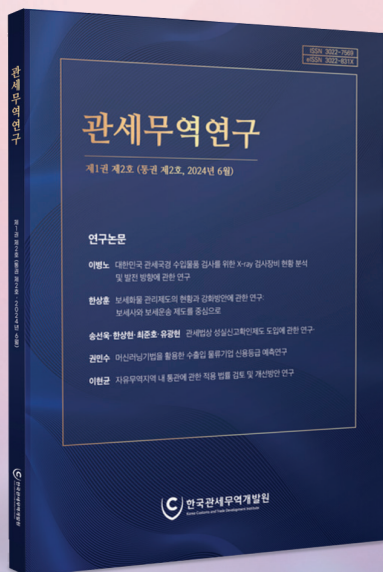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